

강원도립대학교 실험·실습관리위원회 규정

(제정) 1998-07-13 규정 제033호
(개정) 2001-12-12 규정 제122호
(개정) 2004-04-30 규정 제148호
(개정) 2012-10-15 규정 제306호
(개정) 2016-04-25 규정 제397호
(개정) 2016-12-13 규정 제434호
(개정) 2017-10-16 규정 제480호
(개정) 2021-05-12 규정 제572호

제1조(설치목적) 실험·실습기자재 확보 및 운영관리와 실험·실습에 관한 사항을 사전 검토, 조성하기 위하여 본 대학교에 실험·실습 관리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4.25>

제2조(구성) 위원회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교학처장, 기획홍보처장, 산학협력단장과 각 학과장으로 구성된다. <개정 2012.10.15.> <개정 2016.4.25.> <개정 2016.12.13.> <개정 2017.10.16.> <개정 2021.5.12.>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실험·실습기자재 확보 예산의 계열별 조정
2. 실험·실습기자재의 품목별 선정심의
3. 실험·실습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
4. 실험·실습실 운영 및 관리
5. 기타 실험·실습에 관한 사항

제3조의 2(실험·실습비 운영) 실험·실습비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조의 3(대학 실험·실습설비기준) 대학 실험·실습설비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.

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5조(위원회 의결) ① 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장은 의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사무국 실습지원담당으로 한다. <개정 2017.10.16.> <개정 2021.5.12.>

부칙(2001.12.12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04. 4.30.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 4.25.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6.12.13.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10.16.)

(시행일) 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1. 5.12.)

이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